

2024학년도

행복한 배움으로 미래 역량을 키워가는 아이·다움 정우교육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정 우 초 등 학 교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금남길 28-24
교무실 (063)537-9031 FAX (063)537-3191
<http://school.jbedu.kr/ju4u>



목 차

1. 2024 학사달력	1
2. 방과후학교 시간표	2
3. 학부모 교육 연수자료.....	3
✿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금지 / 3	
✿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불법찬조금 근절 / 5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안내 / 7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이해 / 8	
✿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이해 / 10	
✿ 학생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 12	
✿ 성폭력 예방교육 / 14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 17	
✿ 마약류 및 흡연 예방 교육 / 18	
✿ 장애인식개선 교육 / 20	
✿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 22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 / 23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25	

3월 (20)							4월 (21)							5월 (20)							6월 (18)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	4	5	6	7	8	9	7	8	9	10	11	12	13	5	6	7	8	9	10	11	2	3	4	5	6	7	8
10	11	12	13	14	15	16	14	15	16	17	18	19	20	12	13	14	15	16	17	1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1	22	23	24	25	26	27	19	20	21	22	23	24	2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7	28	29	30	28	29	30					26	27	28	29	30	31		23	24	25	26	27	28	29
31																					30						
★1(금) 삼일절 ■4(월) 시업식 및 입학식 ■20(수) 생각나래(3~6학년) ■22(금) 교육과정 설명회 ■26(화) 교통안전 교육							■3(수) 학교폭력예방교육 ■체격검사(2,3,5,6학년) ★10(수) 국회의원선거 ■12(금) 안전교육체험(25학년) ■15(월)~19(금) 어깨동무주간 ■17(수) 생각나래(3~6학년) ■19(금) 장애인식개선교육 ■22(월)~26(금) 수상안전교육(3,4학년) ■30(화) 과학의 날							◆1(수) 학교장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3(금) 명랑 운동회 ★5(일) 어린이날 ★6(월) 대체공휴일 ★15(수) 부처님오신날 ■22(수) 생각나래(3~6학년) ■30(목)~31(금) 테마식 현장체험학습(4~6학년) ■31(금) 불현장체험학습(1~3학년)							★6(목) 현충일 ◆7(금) 학교장재량휴업일 ■13(목) 다문화이해교육 ■17(월)~21(금) 수업공개주간 ■19(수) 생각나래(3~6학년) ■26(수) 환경교육 ■28(금) 체격검사(5,6학년)						
7월 (20)							8월 (9)							9월 (18)							10월 (2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1	2	3	1	2	3	4	5	6	7			1	2	3	4	5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8	9	10	11	12	13	14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16	17	15	16	17	18	19	20	21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18	19	20	21	22	23	24	22	23	24	25	26	27	28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25	26	27	28	29	30	31	29	30						27	28	29	30	31		
■17(수) 생각나래(3~6학년) ■22(월)~26(금) 여름놀이 주간 ■26(금) 여름방학식							★15(목) 광복절 ■20(화) 여름방학 개학식							★16(월)~18(수) 추석연휴 ■20(금) 학교폭력예방교육 ■25(수) 생각나래(3~6학년) ■27(금) 가을현장체험학습							★3(목) 개천절 ◆4(금) 재량휴업일 ★9(수) 한글날 ■15(화) 교통안전교육 ■16(수) 생각나래(3~6학년) ■25(금) 학습발표회						
11월 (21)							12월 (21)							1월 (2)							2월 (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1	2	3	4	5	6	7				1	2	3	4							1
3	4	5	6	7	8	9	8	9	10	11	12	13	14	5	6	7	8	9	10	11	2	3	4	5	6	7	8
10	11	12	13	14	15	16	15	16	17	18	19	20	21	12	13	14	15	16	17	1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2	23	24	25	26	27	28	19	20	21	22	23	24	2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7	28	29	30	29	30	31					26	27	28	29	30	31		23	24	25	26	27	28	
■12(화) 장애인식개선교육 ■20(수) 생각나래(3~6학년) ■29(금) 진로적성검사(4~6학년)							■11(수) 생각나래 임원선거 (2~5학년) ■23(일)~27(금) 겨울캠프 주간 ★25(수) 기독탄신일							★1(수) 신정 ■3(금) 종업식 및 졸업식 ★28(화)~30(목) 설연휴													
◆1학기 수업일수: 99일 ◆2학기 수업일수: 91일 ◆연간 수업일수: 190일 ◆여름방학: 7.27~8.19(24일) ◆겨울방학: 1.4~2.28(56일)																											

※ 학교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5교시 13:20~14:00	1학년 영어 2학년 돌봄	1,2학년 돌봄	1·2학년 돌봄(학교교육과정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		
6교시 14:10~14:50	1학년 돌봄 2학년 피아노 3학년 영어 4학년 영어(드림)	1,2학년 돌봄종합체육 3학년 피아노 4학년 미술	1,2학년 (돌봄)	1학년 돌봄 2학년 돌봄인라인스케이트 3학년 미술 4학년 창의수학	1학년 돌봄피아노 2학년 돌봄 3,4학년 종합체육 5학년 컴퓨터 6학년 영어(드림)
7교시 15:00~15:40	1학년 돌봄 2학년 영어 3학년 연계형돌봄 4학년 피아노 5학년 난타 6학년 영어(드림)	1학년 피아노 2학년 돌봄 3학년 컴퓨터 4학년 미술 5,6학년 종합체육		1학년 돌봄인라인스케이트 2학년 돌봄 3학년 미술 4학년 창의수학 5,6학년 난타	1,2학년 돌봄종합체육 3학년 창의수학 4학년 컴퓨터 5학년 영어(드림) 6학년 피아노
8교시 15:50~16:30	1,2학년 돌봄 3학년 피아노 4학년 연계형돌봄 5학년 영어(드림) 6학년 난타	1,2학년 돌봄 3,4학년 종합체육 5학년 피아노 6학년 컴퓨터		1, 2학년 돌봄 3,4학년 인라인스케이트 5,6학년 난타	1학년 돌봄 2학년 피아노 3학년 창의수학 4학년 영어(드림) 5,6학년 종합체육
시수합계 (더드림)	8(3)	10	총37 (6)	9	10(3)

강좌 학년	교과			특기적성					정보
	영어	창의 수학	영어 (더드림)	음악		미술	체육		
				피아노	난타	미술	종합체육	인라인스 케이트	컴퓨터
장소	과학실	과학실	영어실	소리방	문화터	조리실	정토관	정토관	정보방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 금지

아이다움
정우교육

1 공교육정상화법

◆ **공교육정상화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 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법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2014. 3. 11. 제정, 2022. 7. 21. 개정

◆ 「공교육정상화법」 주요 내용

-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학교 시험(지필, 수행평가)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을 배운 내용에서 출제
-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행정지도)

◆ 선행교육 판단 기준

구 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평가	재학생	교과 평가 (지필·수행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 대회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2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Q&A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학기를 넘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도계획표를 수정하고 정보공시를 해야 합니다.

◆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교육기부로 운영되는 교과(관련) 프로그램도 선행교육의 규제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기부는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등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교육기부: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자원봉사, 개인재능, 시설·기자재 기부, 활동 지원, 콘텐츠 제공, 프로그램 운영)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부 유형.

◆ 교과 관련 교내 대회에서도 정규 교과 교육과정의 범위를 앞선 문항을 출제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교과 평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학기를 단위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입학 이전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이후에 다루어야 할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입학예정학생에 대하여 입학 전에 상급 학교(입학예정학교)의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 초6과 중1, 중3과 고1을 연계한 영어, 수학, 논술 등의 교과 프로그램(캠프 등 활용 포함) 운영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교육과정을 앞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 초등학교 1, 2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영어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외의 활동에 해당되므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 교과를 운영하는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학년 단계에 맞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하면서 영어를 활용한 음악활동(chant나 song) 및 국제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관련 체험활동 등을 선행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불법찬조금 근절

아이다움
정우교육

1 청탁금지법의 이해

▶ 김영관법으로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적용대상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① 공직자 등(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② 공직자 등의 배우자, ③ 각종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의 학부모위원을 포함한 민간위원, ④ 부정청탁 및 금품등을 제공한 일반 국민입니다.

◆ 주요내용

(부정청탁 금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금품등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사교·의례·부조의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워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제공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벌칙 등) ①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와 ②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자에게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 위반사례

- 스승의 날에 학생(학부모)이 선생님(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께 선물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선생님의 결혼식에 학생(학부모)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학부모님이 선생님과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교감 선생님께 선물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허용사례

-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카네이션(꽃)을 드리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입니다.
-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등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학교의 선생님과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이 허용됩니다.(동생이 이전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불가능)

부패·공익신고센터

- 상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인터넷: www.clean.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분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2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청소년단체·방과 후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

3 불법찬조금 유형 및 사례

- 각 학급별 대표 학부모들이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한 찬조금품을 학예발표회,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여 야간자율 학습지도, 교직원 선물·회식 등의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생간부 어머니 또는 어머니회(자모회 등)등이 학교 기자재 및 교재·교구 확충, 교실물품 구입, 시설비 확보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지원하는 사례
- 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의 교육활동 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각종경비를 부담하는 사례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차량운영비,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집행 (지도자 인건비, 수당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은 조성 불가)
- 학부모회에서 일인당 회비를 모금하여 찬조금을 조성하고, 이를 별도계좌로 관리하면서 학생 도시락 및 간식을 제공한 사례
- 학교(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회 조성 장학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학부모회장 개인명의 별도계좌에 모금하였으며, 학부모회장이 직접 지급 또는 입금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집행한 사례
-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유지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차량 장기렌탈 비용은 예외)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학교발전기금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판단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4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www.jbe.go.kr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신고]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안내

아이다움
정우교육

교육활동보호 안내

다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

2024년

달라지는 점

1.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객관성 강화
2.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부과 →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간섭 억제

교육활동보호의 필요

교육활동보호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의 밑거름이 됩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배움과 실천의 인성교육,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교원지위법 제19조제1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순교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 1) 동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또는 분쟁조정
- 2)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

-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처분(의무교육대상자 미적용)

※위 조치 중 ③호 특별교육은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야 함 (미참여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

- 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②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위 조치 중 ②호 특별교육 미참여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원지위법 제35조제1항)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함께 노력해주세요!!

선생님은 한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 인권과 선생님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육 활동 중(학급별 시간표 참고)에는 **교무실로 연락**하여 메모를 남겨주세요.
- 긴급한 사안(예: 등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픈 경우)은 **교무실로 전화**하시거나 **문자**를 남겨주세요.
- 긴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문의, 긴급하지 않은 의견 제시는 **알림장에** 적어 알려주세요.
- 문의하시기 전 **알림장**이나 **학급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 각종 SNS 서비스보다는 **문자**를 이용해주세요.
- 가급적 선생님의 개인번호로 연락을 지양하여 **업무 시간 외의 쉼과 사생활을 보장**해주세요.
- 학부모님께서도 학생 및 학교교육활동 관련 학교와의 상담을 진행하고자 할때는 학교홈페이지『**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를 이용하여 주세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이해

아이다움
정우교육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

가.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적 폭력 : 때리기, 밀기, 차기, 찌르기, 옷·물건 망가뜨리기 등
- 언어적 폭력 : 놀리기, 비하하기, 욕하기, 모욕하기, 위협하기(말, 쪽지, 이메일), 소문 퍼뜨리기 등
- 관계적 폭력(따돌림) : 외톨이 만들기, 무시하기, 찌러보기, 비웃기 등

나. 학교폭력 피해자녀의 징후

-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있다.
- 돈을 자주 요구하며 때로는 훔친다.
- 쾌활하던 자녀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우울한 표정을 띤다.
- 일기장, 메모 등에 폭력적인 그림이나 낙서가 있다.
-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며 친구에게서 받았다고 한다.

2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 피해학생 보호 조치

- 심리상담 및 조연 (각종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일시보호(경찰 동행 보호 등)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피해 보상)
- 학급 교체(희망할 경우)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 퇴학(고등학교에만 해당)
- 학부모 특별교육(불응 시 과태료 부과)

3 학교폭력 대응 방안(부모님의 대처 방법)

- 자녀에게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하며 자녀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 감정을 조절하여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대화합니다.
-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위급할 경우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우리 아이,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요?



평소 대화를 통해 **올바른 언어습관**을 지도하고,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이버폭력에 대해 자녀와 주기적으로 대화하며, **대처 방법 및 피해 시 도움 요청 기관**에 대해 안내해 주세요.



음란물 및 폭력물 등의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주세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자녀가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해 주세요.



사이버 폭력 피해 시, **보호자와 교사에게 먼저 상의**하게끔 지도해 주세요.

사이버 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사이버폭력에 노출되었다면 이렇게 하세요!

증거자료 확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화면 캡처,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파일명에 일시와 장소를 적어둡니다.

보복 대신 침착한 대응

사이버 공간에서 다툼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가해자를 직접 만나 보복하지 말고, 거부 의사를 밝힌 후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를 남기고 대화방을 나갑니다.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

학생이라면 보호자 또는 교사와 먼저 상담을 하고, 학부모라면 학교, 전문기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이버폭력 피해 입증은 이렇게 하세요!

ID 확인이 가능할 경우

게시 일시, 공간, 글 내용이 나오도록 화면 캡처

피해 구제 도움 기관

인터넷 피해 구제센터

(<http://remedy.kocsc.or.kr>)

-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기관
- 권리침해정보 심의, 명예훼손 분쟁 조정, 권리침해 상담 등 피해 구제

ID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게시 일시, 인터넷 주소 전체, 접속 IP 등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자료 캡처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 여성가족부 운영 기관
- 불법촬영물 유통 피해 시, 촬영물 삭제 지원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신종 사이버폭력 등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7개 정부부처와 6개 기관에서 참여하여 제작한 **「함께 실천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가이드」**를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스마트폰 과의존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사이버폭력 신고

안전Dream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성범죄 등 신고-상담서비스
www.safe182.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제보 서비스
-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해킹, DDoS),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사이버 사기, 피싱), 불법 콘텐츠 범죄(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등
ecrm.police.go.kr

도움이 되는 모바일 앱

푸른코끼리

- 사이버폭력 고민상담 서비스 (1:1 카톡상담, 전화상담, 게시판상담 등)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제공 (학교로 찾아가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신청 후 강의 수강 가능)

다들어줄게

- 청소년을 위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
- 고민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가능
- 365일 24시간 1:1 상담
- 월링토크 제공

사이버폭력 상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청소년전화 1388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www.cyber1388.kr / (유선전화)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서비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www.wee.go.kr

스마트심센터 스마트폰과외존상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www.iapc.or.kr

학부모 참여 이벤트

17개 시도교육청과 7개 부처, 6개 기관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대국민 공동포럼」**에서 듣고 싶은 강연 주제를 알려주세요.

2023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학교폭력 예방 대국민 공동포럼'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참여기간 2023. 07. 04. ~ 07. 17.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이해

아이다움
정우교육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입니다. 착하고 순수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폭력과 학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함은 물론, 스스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아래 내용을 가정에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십시오.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및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각 목)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 ▶ (형법)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 (아동복지법)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

※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 행위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보다 좁은 개념(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및 유기

※ 아동학대의 유형에 따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세요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기관

- 국번 없이 **112**(전화, 문자)
- 시도,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
- 모바일앱(아이지킴이 앱)
- 보건복지 콜센터 **129-6**번(아동학대 상담)
- 아동보호전문기관(동부: 042-254-6790, 서부: 042-716-2020)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 흐름도

신고전화

- 112(경찰)
-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의심상황정보 파악

- 피해아동 현재상황/ 인적사항
- 학대행위자 관련사항
- 신고자 관련사항
- 아동학대 의심 사항

아동학대 의심사례

- 즉각 현장 출동 및 아동학대 조사 실시

일반 상담

- 필요 시 유관기관 등 관련정보 안내

※ 경찰청으로 신고된 사안(교사 대상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기관의 요청 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 절차 시행

- (해당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변호사 등이 학교를 방문하여 사안 확인
- (시교육청) 교사 대상 아동학대 사안 관련 교육감 의견서(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 작성 후, 수사기관에 제출

징계권 폐지 안내

징계권이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시기

2021년 1월 26일에 폐지되었습니다.

※ 아동은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처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 아동 학대의 징후

<p>[신체 학대]</p>	<p>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p>	<p>[성적 학대]</p>	<p>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등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 거드랑이, 팔뚝·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어른과의 접촉 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귀가에 대한 두려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 ○ 입천장 손상, 성병감염 및 임신, 인두염질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수면장애(유뇨증, 유분증),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 ○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등 	
<p>[정서 학대]</p>	<p>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p>	<p>[방임]</p>	<p>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장애 ○ 신체발달 저하 ○ 언어 장애 ○ 원형 탈모 등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 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 신경성 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지연, 발달 지체 ○ 음식을 구걸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 섭취 ○ 냄새 나는 의복,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등 	

★아동 학대 신고요령

☞ 1STEP : 아동학대 발견 및 의심이 가는 경우

-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인지하기
-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 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
- 피해아동 발견 시 위험상황으로부터 빠르게 조치하기

☞ 2STEP : 아동학대 신고 112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안전신고센터(119), 범죄 신고(112)
- 학대 의심 내용, 아동 및 학대 행위자, 신고자 정보 전달하기
- 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 3STEP : 협력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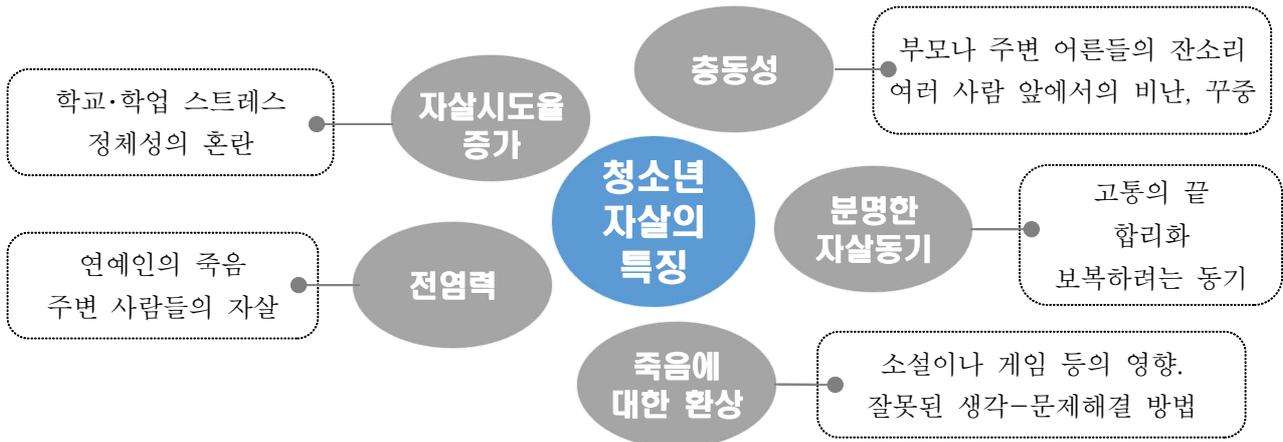
-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
-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협조 : 보호 중인 피해 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를 요구 시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알리기



학생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아이다움
정우교육

1 청소년 자살의 특징



2 청소년 자살예고 징후

행동 신호

- 줄, 칼 등을 준비하고 감춤
- 수면, 진통제, 감기약 등을 모아서 감춰둠
-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나 선생님을 찾아감
- 일기장, 낙서, 블로그, SNS 등으로 자살, 죽음에 대해 표현
-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거나 의미 있는 소장품을 남에게 주거나 버림

언어 신호

- 나 정말 죽고 싶어
- 내가 죽어버리면 좋을텐데...
-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 사라져 줄게
- 멀리 떠나고 싶다
- 깨어나지 말았으면...
- 날아가버리고 싶다
-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겠지?

기타 신호

- 갑작스러운 행동변화
- 흥미와 에너지의 저하
- 사람들과 만남을 끊고 혼자 지내려 함
- 감정기복이 심해짐
- 식욕과 수면습관의 변화
- 외모와 위생 상태에 대한 관심의 결여
- 성적이 떨어지거나 조퇴, 무단결석이 많아짐
- 위험한 행동이 증가함

3 청소년 자살방지를 위한 노력 및 방법

가. 자살예방 대처방법(가정)

- 자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자살에 대한 생각, 시도, 방법 등).
- 자살에 대한 생각과 삶을 지속할 이유 등 자녀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 논쟁이나 비판이나 충고, 설교, 조언은 하지마세요.
- 부모님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세요.
- 말과 몸짓으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주세요(힘든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이나 몸은 자녀를 향해 주세요).
- 자녀의 감정을 공감해주세요.
- 자살 이외의 어려움을 해결할 여러 대안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 자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으세요.
- 곁에 머물러 주세요(자살은 충동적이므로 잠깐 고개를 돌린 순간에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 도움을 요청하세요(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 청소년 생명존중(자살예방) 7계명

- 진심어린 사랑으로 학생을 대한다.
- 학생의 장점과 강점을 부각시킨다.
- 학생과의 면담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 학생의 말을 잘 경청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한다.
- 학생지도 시 자존심 손상이나 인격적 모욕감이 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학생의 친구들에게 조력을 구한다.
- 자살 위험이 높은 경우 전문가나 기관에 의뢰한다.

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생명의 전화 (☎1588-9191, www.lifeline.or.kr)
- ☞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www.suicideprevention.or.kr)
- ☞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번없이 1388, www.kyci.or.kr)
- ☞ 문자상담 「다 들어줄 개」 (☎1661-5004)



성폭력 예방 교육

아이다움
정우교육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성가치관 형성에 대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청소년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복한 삶의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배려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1 부모가 함께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로 하는 것, 보여주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성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을 포괄합니다. 이는 신체적인 접촉을 얼마나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며, 가벼운 추행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성폭력으로 봅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신체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만지는 행동, 상대방의 몸에 대해 놀리는 등 수치심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영상, 사진, 그림 등을 보여주는 것 모두 성희롱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2. 또래 친구끼리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은?

- 가. 야한 말이나 농담, 사진, 동영상을 카카오톡, 밴드 등 SNS로 보냄
- 나. 친구의 몸에 대해 놀리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말함
- 다. 장난하는 척 친구의 바지를 내리거나 치마를 들추는 행위
- 라. 장난하는 척 슬쩍 가슴이나 상대방의 생식기를 만지는 행위
- 마. 외모에 대한 별명을 지어서 놀림

※ 무심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성폭력이며 처벌 대상임을 기억합니다.

3. 학부모 지침 및 준수사항

- 가.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자녀의 안전을 지킵니다. 항상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나. 성(性)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자연스럽게, 즉시 그리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 다. 성에 대한 느낌과 가치관은 부모님을 보고 가장 먼저 배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 하는 모습 존중하는 태도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성교육입니다.
- 라.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면 참지 말고 단호하게 싫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며,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줍니다.
- 마. 위험 상황을 알아채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 방법을 알려줍니다.
- 바.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구매 관련 카페나 글을 발견하면 즉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합니다.
- 사. 부모님은 가정에서 항상 아이들 앞에서 고운 말, 좋은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성교육에 임하는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자세

- 가. 성교육을 위해 부모님들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 성에 대하여 엄격하며 금기시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 나. 자녀들의 성적 성숙을 인정하여 현실감각을 갖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다.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 라. 딸이나 아들 모두 이성(異姓)의 성 발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마. 성교육은 과학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 윤리적인 면을 병행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 바. 질문에 답할 때는 당황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불충분한 대답이라도 좋으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사. 자연스러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자. 준비하고 있다가 계기를 포착하여 성교육을 합니다.
- 차. 정확한 성 지식을 알고 있어야 잘 지도하므로 부모 자신도 올바른 성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 카.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교사나 상담 기관을 찾습니다.

5. 성폭력 예방은 ?

- 가. 자녀가 이성교제 할 경우에는 신체적 접촉의 한계를 분명히 해둡니다.
- 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귀가 후 스마트폰 사용은 제한합니다.
- 다. 채팅을 통한 만남은 자제하도록 교육합니다.
- 라. 자녀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집을 오가는 길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미리 둘러봅니다.
- 마. 휴대전화 단축 번호 '0'번에 112를 입력하여 긴급 발생시 활용하고, 호신용 호루라기, 휴대 경보기, 호신용 스프레이를 가방에 넣고 다니게 합니다.
- 바. 버스, 공공장소 등에서 가볍더라도 불쾌한 신체적 접촉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신고해야 함을 교육합니다.
- 사. 평소 성 지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무엇이 성폭력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고 평소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무슨 일이든지 부모님께 말할 수 있게 합니다.

부모 대응 절차(우선순위 및 시간대별)

- 자녀의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지원센터 혹은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하여 문의 및 상담을 한다.
- 자녀의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즉시 경찰(112)에 신고한다.
- 성폭력이 의심되는 근거들을 보존한다.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근거는 진찰을 받아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48시간 이내 입은 옷차림 그대로, 몸을 씻지 않고 병원 방문)
- 학교에 연락한 후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 및 배려를 요청한다.
- 사건 수사, 민사 소송 등 법적 문제, 자녀 치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부모의 유의사항

- 자녀에게 침착하고, 흥분하지 않으며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 자녀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고 믿어주고 감싸고 보호해 준다.
- 성폭력은 피해자 잘못이 아니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안심시킨다.
- 부모가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지 않는다.
- 부모의 미흡한 대처로 수사 및 치료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을 통한 의료 및 상담 지원, 법률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 자녀에게 피해사실의 심각성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키지 않는다.
- 피해 사실에 대해 자녀에게 추궁하듯 반복해서 묻거나 대답을 강요하지 않고, 자녀를 비난하는 언행을 삼간다.
- 의문이 있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성 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가에게 문의한다.

TIP, 꼭! 알아 두세요!

- ONE-STOP지원센터(☎117)
- 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1388)
- 학교폭력SOS지원단(☎1588-7179)
- 해바라기아동센터 (www.forchild.or.kr)
-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활용
 - 홈페이지 주소 : www.sexoffender.go.kr 접속하여 인증절차 후 조회
 - 이용자 범위 : 성인 및 미성년자 열람 가능
 - 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우편을 통해 인터넷 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세한 주소가 담긴 주변 성범죄자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1. 성폭력 & 성매매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

▶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은 모두가 피해자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이용된 경우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 구분 없이 모두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 디지털 성범죄 유형

▶ 디지털성범죄 유형

- ① **불법촬영** :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 ② **유포** :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③ **소비** :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

-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후 게시 (몰래 찍은 후 온라인유포)
- 성적촬영물 비동의 유포
- 디지털 그루밍-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고 다양한 통제 및 조종기술을 사용하는 것 (주로 아동청소년대상으로 일어남)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단톡방 성희롱, 게임 내 성적모욕)
- 유포협박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포협박)
- 재유포 및 제3자유포 (최초 유포 이후 2차유포)
- 사진 성적 합성 후 게시(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여 성적으로 이용)

3.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들을 알려주세요.

- ① 온라인상에서 누군가가 나의 몸 사진 혹은 벗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나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려고 할 때
- ② 온라인상에서 나의 신체 사진을 누군가와 공유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협박받을 때
- ③ 누군가가 나에게 통화, 메시지 등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때
- ④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실제로 만나자고 계속 요구하고, 내가 그것에 압박감을 느낄 때
- ⑤ 누군가가 나에게 성관계에 대해 말하고 내가 불편함을 느낄 때
- ⑥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 성적인 대화나 만남을 요구할 때
→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누군가에게 개인정보(학교, 사는 곳, 메신저 ID)나 나의 사진/영상을 보내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해주세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



전문 기관 목록

-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평일 10:00-17:00)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stopds)
-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 817-7959 (평일 10:00-17:00)
- ▶ 한국성폭력상담소 02) 338-5801 (평일 10:00-17:00)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women1366'으로 검색)
- ▶ 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가능)
-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24시간 전화 상담) #1388 (24시간 문자·카카오톡 상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아이다움
정우교육

1 학부모님, 도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 도박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도박 행동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의 접근성이 높아져, SNS를 통한 불법 도박광고 및 홍보문자가 무분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아이들의 도박문제를 예방할 백신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친구들과 돈 거래가 잦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선물 등)을 자주 사주고, 짜증이나 신경질을 내는 등 정서적 문제가 있는지 가정 내에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박을 하게 되는 동기



금전동기 쉽게 큰 돈을 따고 싶거나 잃은 돈을 만회하고 싶은 욕구



흥분동기 스릴과 흥분, 짜릿함,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욕구



회피동기 현실 문제의 압박감, 우울감, 스트레스를 잊고 싶은 욕구



사교동기 직장 동료나 주위 친구들과 놀이 및 친목의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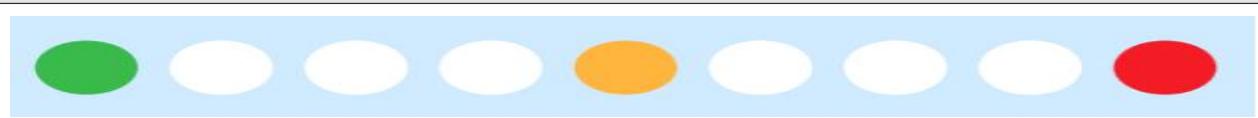
유희동기 가벼운 즐거움과 여가를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욕구

2 우리 아이들이 도박문제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 도박행동 자가점검 선별척도를 통해 아이들의 도박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9개 문항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cgp.or.kr/> 접속 또는 자가점검 바로가기



□ 우리 아이들의 도박행동 자가점검 후 점수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을까요?



비문제 수준 (0~1점)

도박문제는 없어요. 만약 도박을 자주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위험 수준 (2~5점)

문제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중단해요.**

문제 수준 (6점 이상)

도박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도박문제 전문상담 ☎1336 전화해요.**



헬프라인 1336은 전국 단위의 도박문제 전화상담 번호 (연중무휴)입니다.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박자 및 가족·지인들은 국번없이 1336으로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및 흡연 예방 교육

아이다움
정우교육

1 청소년 흡연

□ 금연! 가정에서부터 함께 해주세요.

1. 청소년 흡연의 특징

영향 요인	청소년 흡연의 특성
흡연 시작 시기	만13세 ~ 만15세 사이에 가장 많이 시작(최근 연령이 점점 낮아짐.)
가족 흡연	흡연자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흡연을 많이 함
학교생활	학교생활에 불만족할수록, 흡연하는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이 길수록, 흡연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흡연을 많이 함
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의 반응	부모가 자신의 흡연 여부에 관심이 없거나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을 많이 함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가 거부적, 통제적이라고 생각할수록 흡연을 많이 함
정 서	불안감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흡연을 많이 함

2. 청소년 흡연의 폐해

- 가. 청소년 흡연은 두뇌 활동에 영향을 주어 기억력과 성적이 떨어집니다.
- 나. 청소년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 심하고 금단현상이 쉽게 나타나 금연이 어렵습니다.
- 다. 청소년 흡연은 키 성장을 방해하고 폐를 비롯한 신체 장기에 무서운 병을 일으킵니다.

3. 청소년기에 또래 친구가 미치는 영향

술이나 담배를 권유하는 친구에게 'NO!'라고 말하도록 가정에서부터 지도 부탁드립니다.

- 가. 고마워! 그러나 오늘 저녁은 마시고 싶지 않아
- 나. 속이 메스거리 술은 안 마시는 것이 좋겠어.
- 다. 난 장염 치료 중이라 술은 마실 수 없어.
- 라. 폐가 약해서 담배를 피우면 기침을 심하게 해.
- 마. 난 오렌지 주스가 좋아. 주스 마실래.
- 바. 요즘 유행하는 게임, 노래 등으로 화제를 바꾼다.
- 사. 우리 농구 하러 가지 않을래?
- 아. 난 지금 가야 해. 영화 볼 약속이 있어



이미지 출처: 보건연구회

4. 간접흡연과 3차 흡연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옆에 있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마시므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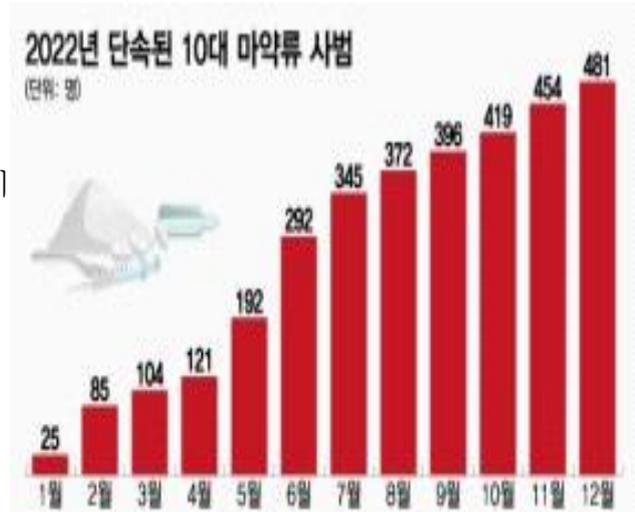
흡연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 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 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간접흡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흡연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 역시 흡연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1. 최근 발생한 10대 마약 사건

- ▶고등학생 3명이 범행을 공모하여 텔레그램 채널로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
- ▶충북 음성군 10대(18세) 집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환각 버섯’을 집에서 재배해 캡슐 형태로 가공하여 판매하다 적발
- ▶2022년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 투약 및 유통한 혐의로 무더기 적발



2. 어떻게 학생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 마약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SNS의 발달로 피자 한 판 가격으로도 마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스’ ‘작대기’, ‘캔디’등의 친숙한 은어를 사용하여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같은 특정 SNS에서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이모티콘’을 암호화하여 마약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부모님들께서는 대화나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사용 습관을 주시하고 점검해주세요.

▶ 마약을 경험하게 되는 공통점을 주목!

청소년의 마약 구매 이유는 대부분 ‘호기심’입니다. 학생들에게 마약의 중독성과 위험성을 가감 없이 사실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는 필수입니다.

마약이나 마약성 약물 판매가 의심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긴급범죄 신고전화(112)로 꼭 신고하도록 지도해주시고 중독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899-0893)로 연락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상담소의 전국 상담 대표전화 : 1899-089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면접상담, 편지/PC상담 등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 재활문의 바로가기 ☞ <http://www.drugfree.or.kr/counsel/index.html?contentsNum=4>



장애인식개선 교육

아이다움
정우교육

1 통합교육이란?

통합교육이란?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분리교육을 실시하여 또래 친구들과 필요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2 통합교육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물론 비장애 학생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교육대상학생

- ① 비장애 학생과의 상호작용
 - 다양한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 기술과 사회적응 기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 ②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
- ③ 자존감 향상
- ④ 연령에 맞는 폭 넓은 교육
 - 또래와 상호작용하고 통합학급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리교육에서는 누리기 힘든 폭 넓은 교육을 통합교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장애 학생

- ①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
 - 현대사회에서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인간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서로 다른 의미를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 ②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
 -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학생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 ③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버리고, 장애인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배웁니다.
- ④ 인권감수성의 향상
 -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함께 지냄으로써 인권에 대해 몸소 체험하고 느껴 인권감수성 향상의 기회가 됩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2008. 4. 11 시행)

★ 차별금지대상

⇒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p>고용(제10조, 제11조)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p> 	<p>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 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p> 
<p>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제18조) 장애인(보조견,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시설물 접근 및 이용을 금지·거부해서는 안 되며,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p> 	<p>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 금지 (제20, 제21조) 공공기관 등이 배포하는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 됨. 또한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추어 수화나 문자 등의 정보이용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p> 
<p>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한다.</p> 	<p>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p> 

4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장애가 있다고 말하는 때는 우리가 그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하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는 그 사람의 많고 많은 특징 중에 하나일 뿐!

피부가 까만사람, 하얀사람, 머리길이가 긴 사람, 짧은 사람, 화사한 옷을 좋아하는 사람, 어두운 옷을 좋아하는 사람, 다리가 긴 사람, 짧은 사람, 안경을 쓴 사람, 안 쓴 사람 이런 특징들은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다양합니다. 다양성에는 인종, 키, 성별, 나이, 취미, 특기, 취향 등등과 더불어 장애까지도 포함됩니다.

장애는 부끄러운것도
감춰야 하는 것도 아니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봐 주세요.
있는 그대로
"나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세요.
나의 장애를 주변 어른이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 하는 마음이
'장애'를 평범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1. 친구를 부르고, 지칭하는 말은 친구의 예쁜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친구를 불러주고, 다른 말은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친구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고 다가가도록 해주세요. "♡♡야, 안녕?"
2. 배려의 시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부담스러워요. 누군가 소중한 부모님의 자녀를 뚫어지게 보거나 수군댄다면 기분이 어떨지 역지사지의 마음을 이야기 나눠주세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처럼, 우리 아이만이 아닌 우리 학교 모든 학생을 위한 학부모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아이다움
정우교육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 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고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의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인권이란?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함께 의미합니다.

☞ 부모님께서 체크(✓) 해 보세요.

내 용(학부모용)	체 크		비 고
	○	×	
1. 가족과 함께 하는 일들이 많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2개 이하 인권 오염이 ▶ 3개-6개 인권 노력이 ▶ 7개 이상 인권 지킴이
2.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3. 아이들의 비밀은 언제나 지킨다.			
4.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는다.			
5.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한다.			
6. 아이들의 의사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7. 아이들이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8. 아이들 앞에서는 부부간에 정중한 언어사용을 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

아이다움
정우교육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가.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15일)
- 나.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인정
 - ※ 위기경보 수준은 '23.6.1.일자 이후 「심각」 → 「경계」 로 하향 조정하여 대응중
 -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다.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 1일 외에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2 출석 인정 결석

-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마.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바. 다음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3 출석 인정 외 결석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

나. 미인정 결석

-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수 초과, 태만, 가출, 고의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관련기관 출석·체포·도피·구속·교도소 수감 등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다. 기타결석(*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같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마.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참가자	학년	반	번	성명	전화	비고

기간	1일 단위	202년 월 일(요일) ~ 202년 월 일(요일)(일간)
	반일 단위	202년 월 일(요일)(오전, 오후) ~202년 월 일(요일)(오전, 오후)()일간
목적지	숙박 장소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보호자명	관계	휴대폰
인솔자명	관계	휴대폰
체험학습 형태 및 주제	◦가족 동반 여행 () ◦친·인척 방문 () ◦답사·견학 활동 () ◦기타 체험활동 () 주제가 있는 0000체험학습 가족행사 참여를 통한 0000 체험학습	
체험학습 학습 계획 및 내용		
확인사항	·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 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 시키겠습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div>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학생 : (인)

신청인 보호자 : (인)

정우초등학교장 귀하

결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신청자	학년	반	번	성명	전화	비고

기간	202년 월 일(요일) ~ 202년 월 일(요일)(일간)
장소	※ 하교시간까지는 반드시 가정에서 학습(학원 및 독서실 등에서의 학습 금지)
학습 계획	※ 가정학습 기간 동안의 학습계획을 시간대 별로 작성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가정학습을 추진하거나 정규수업시간 종료 전 외부 활동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 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년 월 일

학생 : (인)

신청인 보호자 : (인)

정우초등학교장 귀하

	담임	부장	교감	교장
결재				

[서식 2]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성명	학년 반		학년 반 번	
신청기간	202 년 월 일(요일) ~ 202 년 월 일(요일)(일간)			
허가기간	202 년 월 일(요일) ~ 202 년 월 일(요일)(일간)			
누적사용기간/ 인정기간	일 / 일			
위와 같이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 년 월 일				
정우초등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인)				
보호자님 귀하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 전화로 대체할 수 있음)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서식3] 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누 가

()학교	제 ()학년 ()반 ()번	이름 :
------------------	----------------------------	------

■ 언 제

기 간	1일 단위	202 년 월 일(요일) ~ 202 년 월 일(요일)(일간)
	반일 단위	202 년 월 일(요일) (오전, 오후) ~ 202 년 월 일(요일) (오전, 오후)()일간

■ 어디에서

교외체험학습 장소	▶
--------------	---

■ 무엇을, 어떻게, 소감(사진 등 증빙 자료 첨부)

무엇을	
어떻게	각 일정별로 구체적인 체험 내용, 배운 점 등을 자유롭게 기록
소 감	교외체험학습을 통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술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학생:

(인)

보호자:

(인)

결 재	담 임
	전 결

정우초등학교장 귀하

※ 보고서 제출 기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3-1] 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 보고서

■ 누 가

()학교	제 ()학년 ()반 ()번	이름 :
-------	-------------------	------

■ 언 제

기 간	202 년 월 일(요일) ~ 202 년 월 일(요일)(일간)
-----	--------------------------------------

■ 어디에서

가정학습 장소	▶
---------	---

■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결과(필요 시 사진 등은 뒷면 부착)

학습 결과 보고	※가정학습 신청서의 가정학습 계획에 따른 학습 결과 작성
-------------	---------------------------------

위와 같이 가정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학생:

(인)

보호자:

(인)

정우초등학교장 귀하

결 재	담 임
	전 결

※ 보고서 제출기한: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